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황 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84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공 춘 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2. 제정안의 조문체계	10
3. 주요 조문별 검토	12
가.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안 제5조)	12
나. 학비지원(안 제6조)	15
다. 맞춤형 교육지원(안 제7조)	18
※ 참고자료: 대학교 학자금 무이자 대부 및 각종 장학금 혜택 현황	2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황희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16.
3. 회부연월일 : 2026. 3. 17.

II. 제안이유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부대 이동, 격오지·도서 지역 근무 등 특수한 복무 환경에 놓여 있음. 이러한 환경적 제약으로 군인자녀는 학습 연속성 저해, 교육격차 심화 등 교육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군인의 사기 저하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 국방 관련 법령은 군인자녀의 교육 지원을 포괄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여, 국가가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장하여야 할 교육 지원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군인자녀가 겪고 있는 교육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안보에 헌신하는 군인의 자녀가 학비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등 필요한 교육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자녀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군인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국가 안보에 헌신하는 군인자녀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군 복무 특성으로 인한 환경적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3조).
- 나.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입학금·수업료 등 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라. 군 복무 환경으로 인한 교육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 지원, 청소년 캠프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 심리·진로 상담 등 맞춤형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마.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군인자녀를 위한 기숙사 운영, 통학 차량 지원 등 교육 편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바.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군인자녀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인자녀 국립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IV.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근무지 이동, 접경·격오지 및 도서지역 근무, 교육 훈련·작전임무와 비상대기 등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됨.
- 이러한 군 복무의 특성은 군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주거와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학령기 자녀의 경우 부모의 근무지 이동에 따른 반복적인 전학, 학교별 교육과정 및 학습 진도의 차이, 교우관계의 재형성, 교육시설과 사교육 접근성의 지역 간 차이 등을 경험할 수 있음.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의 「군인자녀 교육지원 사업 발전방향 연구」(2019)는 군인자녀가 잦은 전학으로 인해 학습 단절과 정서적 불안을 경험할 수 있고, 읍·면 이하 지역 등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 접근성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음.

동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군인자녀의 63%가 전학 전후 학교 간 학습진도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대일 맞춤형 온라인교육,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 및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우선지원, 수학·영어 중심의 학습지원,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음.

또한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서도 부모의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군인자녀의 교육환경 변화와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1년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군인가족의 가정생활 관심사항 중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22.7%로 나타난 바 있음.

- 군인자녀의 교육여건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군부대가 지리적으로 격리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군인가족이 자녀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잦은 이사와 환경 변화가 자녀의 교육·교우관계 및 새로운 생활환경 적응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¹⁾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군인자녀의 전·입학, 기숙사, 장학금 및 학자금 대부 등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 복무환경에서 비롯되는 교육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국방부는 그동안 군인자녀가 겪는 교육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학습지원, 청소년 캠프, 군인자녀 기숙사, 대학 특별전형, 학자금 대부 및 장학사업 등을 시행해 왔음.

구체적으로 격오지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EBS 교육멘토링, 민간

1) 유지안·이혜정·김은심, 「군인아내의 양육 경험 이야기」,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20권 제4호, 2016, pp. 239-264; 방은상, 「군인자녀 지원정책 발전방안」, 「한국군사회복지학」 제5권 제1호, 2012, pp. 35-70; 유형식, 「Q방법을 활용한 직업 군인 아내의 스트레스 유형화 연구」, 「한국군사학논총」 제13권 제4호, 2024, pp. 167-187.

기업 연계 온라인 학습지원, 삼성드림클래스, 군가족 힐링캠프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입학과 관련하여 군인자녀 특별전형 및 입시설명회도 실시되고 있음.

또한 교육부와 국방부는 2024년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6년 3월 경북 영천고가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개교한 바 있음.

□ 현행 법령에도 군인자녀의 교육지원과 관련된 일부 근거가 마련 되어 있음.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자녀 기숙사를 군인복지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군인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는 자 또는 자율적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 고등학교의 경영자에게 교육운영 및 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군인복지기금법」은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대학 학자금 대부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은 군인자녀 모집 형 자율형 공립고가 군인자녀를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군인자녀 교육지원 제도는 개별 사업 또는 특정 교육

단계별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군 복무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학령 및 지원 필요도에 따라 일관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특히 온라인교육과 캠프 등 일부 사업은 군인복지기금이나 민간 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고, 군인자녀 교육지원 관련 사항이 「군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금법」, 교육관계 법령 및 개별 사업계획 등에 분산되어 있어 사업의 계속성, 지원범위 및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제정안은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학비지원,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편의 지원 및 군인자녀 국립학교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군 복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인자녀의 교육상 어려움을 개인이나 군인가족의 부담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차원의 지원대상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군인 자녀의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과 군인의 가족생활 안정 및 직무몰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유아교육과 초·중·고등학교 교육, 심리·진로상담 및 통학 지원 등은 교육부와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관련 법령과 사업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영역이므로, 국방부가 별도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존 교육지원 제도와 중복 가능성 및 관계기관 간 지원체계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둘째,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에도 군인복지기본계획, 군인복지위원회 및 군인자녀 교육시설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법을 개정·보완하여 관련 정책을 확대·체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군인자녀의 안정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별도의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는 현행 군인복지위원회를 활용하고, 학비지원, 심리·진로상담, 통학차량 지원 및 국립학교 설립 등은 기존 교육부·지방자치단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기획예산처는 학비지원에 대하여 영유아부터 고등학생은 무상교육 대상자로 법률안의 학비지원 내용과 중복수혜가 될 수 있고, 대학생 역시 국방부 차원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과 장학금 수여 사업을 고려하여 예산의 다수 대상에 대한 중복수혜를 고려하여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별도 위원회 신설보다는 기존 군인복지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교육부는 심리·진로상담 등 기존 교육사업과의 관계 및 국립학교 설립·운영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조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제정안에 대하여는 군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인한 군인자녀의 교육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군인복지기본법」과의 관계 및 중복수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제정안의 조문체계

- 제정안은 별도의 장 구분 없이 총 10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인자녀 교육지원의 목적과 기본원칙,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의 신설 근거 마련, 교육지원 사업 및 군인자녀 국립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조문체계]

구분	조문	주요 내용
총칙적 사항	제1조	법률의 목적
	제2조	군인 및 군인자녀의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교육지원의 기본원칙
정책 심의체계	제5조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교육지원 사업	제6조	어린이집·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에 재학하는 군인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제7조	온라인 학습, 청소년 캠프·특화 프로그램 및 심리·진로상담 등 맞춤형 교육지원
	제8조	군인자녀 기숙사 운영 및 통학차량 지원 등 교육 편의 지원
교육시설	제9조	군인자녀 국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
벌칙 적용	제10조	공무원이 아닌 교육지원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부칙	부칙 제1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2조	위원 임명 및 위원회 구성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 제정안의 조문체계를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법률의 목적, 적용대상이 되는 군인과 군인자녀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교육지원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총칙적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5조에서는 군인자녀 교육지원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규모와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등 정책 심의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제6조는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의 군인자녀에 대한 입학금·수업료 등의 학비 지원을, 제7조는 온라인 학습지원, 청소년 캠프 및 특화 프로그램, 심리·진로상담 등 군인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제8조는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자녀를 위하여 기숙사 운영과 통학차량 지원 등 교육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9조는 자녀교육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군인자녀에게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인자녀 국립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음.

제10조는 교육지원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비밀누설

죄와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법률의 시행일과 위원회 구성 등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정하고 있음.

- 이하 주요 조문별 검토에서는 주요 쟁점이 있는 군인자녀 교육 지원위원회(안 제5조)와 학비지원(안 제6조) 및 맞춤형 교육지원(안 제7조)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임.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안 제5조)

제정안은 군인자녀 교육지원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국방부차관으로 하며, 15명 내외의 관계 공무원과 교육·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5조(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국가의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관계 공무원, 교육 및 복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5조는 국방부·교육부·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간 정책을 조정하고 교육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학비·온라인 학습·심리·진로상담·기숙사·통학 및 학교 설립 등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단계와 지역여건에 맞게 종합적·체계적으로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가 「군인복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존의 군인복지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군인복지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군인복지기본법 제8조
- 소 속 / 구 성 : 국방부 / 10명 이내(위원장 국방부차관)
- 설치목적 :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심의사항 : 1.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인복지 향상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군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군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 관계부처 의견을 살펴보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공통적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군인자녀 교육정책에 대하여는 「군인복지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군인복지 위원회를 활용하여 심의·의결사항을 의결하고 필요시 의결에 필요한 자문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정동의한다는 입장임.

- 따라서 제정안에 대하여는 실효적인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대한 국가의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려는 입법

취지와 함께 「군인복지기본법」의 군인복지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우려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
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나. 학비지원(안 제6조)

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군인자녀에게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6조(학비 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학비 지원의 기준·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군인자녀의 입학금·수업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군 복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자녀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적지 않은 학비가 소요되는 대학생 등을 포함한 군인자녀의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며

군인의 복지와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입법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 학비 등의 일반적인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제정안의 지원대상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유치원 유아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에 근거하여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이 시행되고 있음.²⁾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이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용 도서 구입비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음.

대학생에 대해서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국가장학금 I·II 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등 국가장학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하여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거치·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시행되고 있음.³⁾

이와 별도로 군인자녀에게는 군인복지기금에 따른 대학 학자금 무이자 대부와 호국장학금·꿈도전지원금 및 민간 장학금 등이 지원되고 있음.⁴⁾

2) 교육부는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대상을 4~5세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3~5세까지 확대할 계획을 제시함. *교육부,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4~5세로 확대됩니다」, 2026. 3. 3.

3)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I 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안내.

4) 참고자료. 대학교 학자금 무이자 대부 및 각종 장학금 혜택 현황 참조

□ 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을 살펴보면,

국방부와 기획예산처는 공통적으로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는 국가 차원의 학비지원이 시행되고 있고, 대학생에 대하여 대학교 학자금 무이자 대부(국군재정단)와 국방부의 호국장학재단을 통해 수여되는 각종 장학금 혜택, 국가 차원의 국가장학금 사업과 중복수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따라서 제정안에 대하여는 대학생 등의 군인자녀 학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군인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기존 국가 학비지원체계와의 체계 정합성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다. 맞춤형 교육지원(안 제7조)

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자녀의 학습격차 해소와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격오지 거주 및 전학 등에 따른 교육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온라인 학습지원, 청소년 캠프와 특화 교육프로그램 및 군 복무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진로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7조(맞춤형 교육지원)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자녀의 학습 격차 해소와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온라인 학습 지원: 격오지 및 전학 등으로 인한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원격 학습 시스템 및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2. 청소년 캠프 및 특화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 활동, 진로 탐색, 리더십 함양 등 군인자녀의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캠프 및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심리·진로 상담: 군 복무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적 안정 지원 및 전문적인 진로·학업 상담 지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의 내용·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잦은 전학과 격오지 근무 등 군 복무환경의 특수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군인자녀의 학습공백과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학습, 청소년 캠프 및 심리·진로상담 등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실시하려는 것으로서, 군인자녀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재 국방부는 EBS 교육멘토링, LG유플러스 아이드림 챌린지, 삼성드림클래스 및 군가족 힐링캠프 등 군인자녀를 대상으로 한 학습지원과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심리·진로상담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시행 중인 위(Wee) 클래스·위(Wee) 센터 및 「진로교육법」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제도 등 기존 교육부·교육청 사업과 그 대상 및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관계부처 의견을 살펴보면,

국방부는 온라인 학습지원과 청소년 캠프 및 특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동의하나, 심리·진로상담은 교육부가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수정동의한다는 입장임.

기획예산처도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심리·진로상담에 교육부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중복지원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교육부는 관련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제정안에 따른 별도 사업의 추진 여부는 국방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 따라서 제정안에 대하여는 잣은 전학과 격오지 거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군인자녀의 학습공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기존 교육부·교육청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04

※ 참고자료: 대학교 학자금 무이자 대부 및 각종 장학금 혜택 현황

● 대학교 학자금 무이자 대부

① 사업 근거

-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학자금대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②학자금대부계정은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 용도로 운용한다.

-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학자금대부계정의 운용)

① 학자금 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본인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학자금의 상환은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②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명)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백만원)	26,466	26,466	21,984	18,035	20,940
지원 인원	6,967	6,538	7,023	6,128	5,598

● 각종 장학금 혜택 현황(국방부)

구 분	계	호국 장학금	꿈도전 지원금	국방부 협약 외부 장학금				
주 체	-	호국장학 재단	국방부	아산 MIU자녀 장학금	롯데 장학금	문암 장학금	건설사회 공헌 재단 장학금	스타 벅스
연간 지급 규모	43.67 억원	12억원 (재단 수익금)	24억원 (군인복지 기금)	3.6억원 (아산장학재단)	2.6억원 (롯데 장학재단)	700만원 (문암장학재단)	4,000만원 (건설공헌 재단)	1억원
지원 대상	-	현역군인 자녀 대학 2~4학년 중 성적우수자 600명 (92점 이상), 배려대상자 600명	현역군인자녀 대학 신입생 중 성적우수자 1,379명 (92점 이상), 일반 511명	현역 준부사관 자녀 중 대학 2학년 재학생 (선발시 3년 지원)	현역 공상 및 순직자 초중고, 대학 자녀 (선정비율 없음)	현역군인 자녀 중 초중고 대학 장애 자녀 (선정비율 없음)	현역 공상 군인자녀, 다자녀 (학년 구분 없음)	순직·공상 군인자녀 (학년 구분 없음)
인원 (명)	3,329	1,200	1,890	90	65	9	25 (공상 15, 다자녀 10)	50
1인당 지급액 (만원)	-	100	100 / 200(성적우수)	400 (6학기)	400	100 (대학생)	200(공상) 100 (다자녀)	200

* 롯데, 문암, 건설사회공헌, 스타벅스 장학금은 지원대상 중 대학생 자녀 인원 매년 변동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일부편집.